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859 구상금
원 고	000000000 주식회사
피 고	00광역시
소 제기일	2005. 1. 6
판결 선고일	2006. 10. 20.
쟁 점	겨울철에 차량운전자가 도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도로관리 주체의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758조

## □ 판결 요지

### ○ 사안의 개요

소의 정○○이 1999. 12. 13. 05:50경 인천 31나○○○○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 앞 도로를 남동공단 방면에서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사고 장소 노면에 빙판이 형성되어 있어 위 승용차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버스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 소외 윤○○ 등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정○○의 보험자로서 위 윤○○과 정○○ 등에게 보험금 등으로 총 218,120,22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위 도로 관리주체인 피고에게 사고발생에 있어 70%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총 지급액의 70%에 해당하는 152,684,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위 윤○○ 등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하고 있는 사안임.

###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우선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도로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도로 설치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 쟁점

1.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 위에 빙판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교통사고

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설치 및 관리주체의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2. 위와 같은 판단에 있어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가.

#### ○ 법원의 판단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함께 고려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도로의 상황 및 지리적 상황, 기상 상황, 피고의 도로 관리의 태양,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운전자의 행위 태양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빙판이 일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 도로관리자인 피고로 하여금 도로에 형성된 모든 빙판을 일시에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가 평소 도로 상황 등에 맞춰 순차적으로 동결방지조치를 강구하여 왔다면, 아직 그러한 빙판제거작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도로 구간에서는 위 정○○이 스스로 그와 같은 도로상황에 알맞은 방식과 태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돌릴 수는 없다.

3. 특히, 겨울철에 비가 내린 직후에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가해 운전자 정○○은 사전에 도로 결빙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그러한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 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 □ 판결의 의미

종래 강설이나 결빙, 혹은 강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관리주체인 국가의 책임 유무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등이 있었는데, 이 판결은 위 판례의 의미를 정리하고, 특수목적의 도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관리하는

일반 도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예측 곤란한 자연현상으로 인한 결빙 등의 위험요소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